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개정

2016. 8. 11.

옹 진 군

인천광역시 옹진군 『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』고시 개정

개정이유

낚시어선의 안전 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함.

주 요 내 용

- 낚시어선업자의 영업구역(서해특정해역)의 제한
-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
- 낚시어선업자의 승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
- 낚시어선업자의 낚시어선업 외 주류 반입·판매·제공 행위 금지

참 고 사 항

가. 개 정 안 : "별지 참조"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"별지 참조"

다. 예산수반사항: "해당 없음"

라. 관계법령발췌: "별지 참조"

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6 - 139호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> 2016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수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사고 방지,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와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,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낚시어선업자(이하 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조 제7호의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이라 한다), 낚시어선업자, 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

- 제3조(영업시간의 제한) ①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 까지로 한다.
 - ② 단, 레이다 반사기 등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어 어선검사증서상 야간운항이 가능한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허용한다.
 - 1. 11월부터 3월까지: 05:00 ~ 20:00
 - 2. 4월부터 10월까지 : 04:00 ~ 21:00
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 (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등)에 따라 출·입항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.
- 제4조(운항횟수의 제한) ①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(이하 "낚시어선업"이라 한다)을 1일 2회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5조(영업구역의 제한) 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른 영해선까지 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수역으로 한다.
 - ② 낚시어선업자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,「해사안전법」,「원자력 진흥법」,「항만법」,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,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, 「어선안전 조업규정」등에 의한 제한 · 통제구역 및 서해특정해역 등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서해5도서는 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, 「어선안전 조업규정」에 따라 해당 어장 수역에 한한다.
 - ③ 낚시어선업자는 공동영업구역인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내의 모든 도서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원칙적으로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승선시켜 제3항의 지역에 부득이 안내 하는 경우 당해 낚시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낚시어선을 대기시켜야 한다.
 - ⑤ 5톤 미만의 무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발생시 휴대폰으로 인근 해양경비안전서, 경찰관서, 소방서, 출입항신고서(통제소)등과 항시 연락 가능한 통화범위내의 해역으로 제한 한다.
- 제6조(기타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(선주·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)하고, 기상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.
 - ②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제1항에 따른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,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서 등에 대피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.
- 1.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낚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2.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낚시 어선 선장의 안전대피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여야 하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 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,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⑥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주류를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

- 제7조(낚시제한기준의 준수) 낚시어선의 승객은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8조(낚시 제한·통제구역의 준수) 낚시어선의 승객은 개별법에 따라 제한 및 통제구역 등의 해역에 낚시어선 안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낚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)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2.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3.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약물복용·음주·가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의 승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. 승객명부의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6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낚시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7.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한다.
- 제10조(기타 준수사항) 낚시어선의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2. 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미끼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3. 해상에 분뇨, 폐기물, 유류 등의 각종쓰레기를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3조(다른 고시의 폐지)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(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5-08호)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